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의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 4 및 정관 24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1년 3월 25일(목) 오전9시

2.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타워동 3층 오키드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6기(2020.1.1~2020.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예정내용 :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0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첨부 참조)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계좌(명부)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뒷면계속 -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7. 기타 안내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미리 알려드리며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장 및 사업장 폐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 동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당사 전자공고 홈페이지에 정정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9일

주식회사 브리지텍
대표이사 신 경 식

직인
생략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p>제 2 조 (목적) 1~10 (생략) <u>11. 기타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u></p>	<p>제 2 조 (목적) 1~10 (현행과 같음) <u>11. 정보서비스업</u> <u>12. 기타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u></p>	<p>추후 신규 사업 확장 방향을 정관상 사업목적에 반영하고자 함</p>
<p>제 8 조의 2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p>	<p>제 8 조의 2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u>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비상장 사채등의 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p>
<p>제 12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u>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u></p>	<p>제 12 조 (신주의 동등배당) <u>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u></p>	<p>-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p>
<p>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u>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u></p> <p><u>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u></p> <p><u>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6)</u></p>	<p>제 16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u>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u></p> <p><u>② 회사가 제 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u></p> <p><u>③ 회사가 제 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 17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③ (생략) ④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 17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p>
<p>제 22 조 (소집시기) ① <u>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u> ② <u>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9.03.26)</u></p>	<p>제 22 조 (소집시기) ① 삭제 ② 삭제 <u>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u></p>	<p>-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p>
<p>제 53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u>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6)</u> ③ <u>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6)</u> ④ ~ ⑧ (현행과 같음)</p>	<p>제 53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u>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5)</u> ③ <u>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 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5)</u> ④ ~ ⑧ (현행과 같음)</p>	<p>-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p>
<p>제 56 조 (이익배당) ① ~ ② (생략) ③ <u>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u> ④ (생략)</p>	<p>제 56 조 (이익배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 1 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u> ④ (현행과 같음)</p>	<p>-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p>
<p>제57조 (분기배당) ① ~ ③ (생략) ④ <u>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u> ⑤ (생략)</p>	<p>제57조 (분기배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 1 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u> ⑤ (현행과 같음)</p>	<p>- 분기배당에 대한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p>
<p>부칙 1~14 (생략)</p>	<p>부칙 1~14 (현행과 같음) 15.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